명예학위규정 5-1-4

규정번호 5-1-4
제정일자 2002.2.21
최근개정 2013.7.1
개정차수 4차 개정
관리부서 학사지원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명예학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증서 수여의 대상) 학위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명예를 빛낸 자
2. 재학 중 사망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귀감이 되었던 자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학위증서 수여의 시기) 명예학위증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수여하며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4조(수여자의 대우) 명예학위자는 우리대학 정규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학위수여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학위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학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제6조(학적부의 기록) 명예학위자는 학적부에 명예학위에 관한 사항을 등재한다.

제7조(학위의 취소) 명예학위자가 우리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 총장은 명예학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56> <생략>

<57> 명예학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 제7조, [별지 제1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8>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30> <생략>

<31> 명예학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②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한다.

<32> - <49> <생략>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27> <생략>

<28> 명예학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②항의 “학생처장”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29> - <30> <생략>

[별지 제1호]

제 호

명 예 학 위 증 서

학 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 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분으로 우리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시고 명예를 드높였으므로 이에 명예학위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장